

KR I-05030

Rev.18 February 2025

영상감시설비

2025. 2.



국가철도공단



REVIEW CHART

개정 번호	개정 일자	개정사유 및 내용(근거번호)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0	2012.12.05	설계기준체계 전면개정 (설계기준처-3537, 12.12.05)	조무호	석종근 오준호	김영우
1	2013.06.18	승강장 영상감시장치 모니터 설치 기준 개정 (설계기준처-1940, 13.06.18)	조무호	석종근 오준호	김영우
2	2014.06.30	○ 영상전송방식 선정 시 고려사항 명확화 ○ 고속철도 취약개소 및 무인기능실 영상감시설비 설치기준 정립 등 (설계기준처-1862, 14.06.30)	황순길	김대원 김학렬	이동렬
3	2014.12.30	영상감시장치 저장기능, 화탐설비 자동감시, 운송기관 경계역 감시 (설계기준처-3950, '14.12.30)	김규곤	김대원 김학렬	이동렬
4	2015.07.01	○감시대상 및 목적 수정 ○카메라 배선 및 배관 내용 삭제, ○감시대상 변경(역구내 열차 진출 입개소) 중복내용 삭제 ○사법경찰 영상감시설비 내용 추가 설계기준 일부개정 (설계기준처-1839, '15.07.01)	김규곤	김학렬	이동렬
5	2015.10.07	2015년 종합감사(호남본부) 결과 처분요구 반영 (감사실-2041, 2015.08.12.) ⇒신호기계실내 영상감시설비 및 영상감시설비 배관·배선 제외	황순길	김학렬 손병두	이동렬
6	2016.12.27	영상감시설비 설치기준(선로전환기, 무인기능실 등) 개정(설계기준처 -3680,'16.12.27)	황순길	손병두 이광재	김영하
7	2017.12.27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 (설계기준처-3853, '17.12.27)	신재범	이광재	이만수
8	2018.12.17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 (기준심사처-2831, '18.12.17)	신재범	오준호	민병균
9	2019.12.19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 (기준심사처-4359, '19.12.19)	신재범	오준호	박창완

개정 번호	개정 일자	개정사유 및 내용(근거번호)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10	2020.07.30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 (기준심사처-3062 '20.07.30)	함만식	박창완 권유철	이계승
11	2020.12.29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 (기준심사처-5242 '20.12.29)	함만식	박창완 신이섭	최원일
12	2021.07.05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 (기준심사처-2690, '21.07.05)	함만식	이창현 신재범	최원일
13	2021.12.21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 (기준심사처-5033, '21.12.20)	함만식	이창현 신재범	유성기
14	2022.07.04	역사 계단부 카메라 추가 등 (기준심사처-2515, '22.06.30)	임선주	이창현 신재범	유성기
15	2022.12.27	○ 폴 등반이율 설치개소 명시 ○ 승강장 카메라 설치기준 개정 ○ 무인변전소 출입 감시용 카메라 설치기준 마련 (기준심사처-4929호, '22.12.26)	임선주	이창현 신재범	김종호
16	2023.12.28	○ 승강 방식 적용 기준 마련 ○ 시각동기화 방안 단서 조항 추가 (기준심사처-4991호, '23.12.27)	임선주	이창현 서정민	김종호
17	2024.07.19	○ 출입통제설비 설치위치 명확화 등 (기준심사처-1502호, '24.07.18)	권순호	서정민	백효순
18	2025.02.11	○ “정보통신분야 철도건설기준 고도화 용역” 결과에 따른 각종 문구자구 등 정비 ○ 함체 내부 온도 상승 예방을 위한 방열형 함체 반영 (심사기준처-510, '25. 2. 11.)	권순호	박진용 서정민	손병두



목 차

1. 용어의 정의	1
2. 영상감시설비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1
3. 영상감시설비 설치	2
4. 영상감시설비의 기능 및 성능	5
5. CCTV 카메라 폴(Pole) 및 안전작업대	5
6. 인터페이스 업무분계	6
7. 영상감시설비의 연계운용 인터페이스	6
해설 1. 영상감시설비	7
1. 영상감시설비 설계	7
2. 영상전송방식의 선정 시 고려사항	7
3. 카메라 렌즈 및 주변기기의 선택	7
4. 역사 감시설비	9
5. 카메라 설치 방법	9
6. 선로변 영상감시설비	10
7. 철도경찰 방법용 영상감시설비	11
RECORD HISTORY	12

1. 용어의 정의

(1) 영상신호

영상주사에 따라 생기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신호

(2) 화소(Picture Element)

밝기와 색도가 다른 미소한 점, 즉 이점의 집합체가 화상정보

(3) 주사

화면을 화소의 휘도 또는 색에 따라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화면을 순차 분석하는 것

(4) 주CCD(Charge-Coupled Device) 촬상소자

고체 촬상소자 중의 하나이며, 기본적으로 빛 에너지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수천만 화소를 포함하는 집적회로가 내장된 이미지 센서로서 원화상을 광학계를 이용해 고체소자에 결상시켜 그 상을 고체소자 내에서 전자적으로 주사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해 출력하는 소자

(5)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촬상소자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를 이용한 이미지 센서이며, 빛에 의해 발생된 전자를 전압으로 바꾸어 출력시키는 소자

2. 영상감시설비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1)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등)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 따라 다음의 시설에는 영상감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승강장, **맞이방**, 승강설비)

② 차량정비기지

가. 「철도사업법」 제4조제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차량정비기지

나. 철도차량을 증정비(철도차량을 완전히 분해하여 검수·교환하거나 탈선·화재 등으로 중대하게 훼손된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차량정비기지

다. 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차량정비기지

③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

가. 변전소(구분소를 포함한다), 무인기능실(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또는 열차 제어설비 운영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나. 노선이 분기되는 구간에 설치된 분기기(선로전환기를 포함한다), 역과 역 사이에 설치된 건널선

다.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교량 및 터널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설치된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터널



④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널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

(2) 영상감시설비는 다음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다음의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모두 설치할 것

- 가. 여객의 대기·승하차 및 이동 상황
- 나. 철도차량의 진출입 및 운행 상황
- 다. 철도시설의 운영 및 현장 상황

3. 영상감시설비 설치

(1) 역사 승강장, 맞이방, 광장, 노선이 분기되는 개소, 변전소(구분소), 무인기능실 및 낙석 우려개소, 건널목 개소, 전차선로 절연구간, 주요 터널·교량, 시·종착역 반복선, 자전거보관소(단, 설치주체가 공단인 경우), 차량정비기지 및 감시가 필요한 취약개소 등에 설치하여 현장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 운용자의 필요에 따라 영상의 선택 및 녹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단, 주차장 영상감시설비는 주차장시설 운영자가 설치하도록 한다.

(2) 카메라의 영상신호는 7일 이상(단,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차량정비기지는 90일 이상), 철도방법용 60일 이상 디지털 영상저장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저장 및 재생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카메라는 영상감시 목적에 적합한 개소에 설치하되, 역구내 감시용 카메라와 철도경찰 방법용 카메라의 영상감시범위가 중첩되는 개소는 카메라를 공용사용 하고, 조도, 원격감시 등에 따른 카메라 조정 방안(Zoom, Pan/Tilt)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 공용사용 범위: 카메라(고정형), 배관 및 배선, 네트워크 스위치 등(영상저장장치, 운용장치는 제외)

(4) 진동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정적이어야 한다.

(5) 역무실 등에는 승강장, 맞이방 등의 안전이 취약한 장소의 상황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역에 대해서는 필요시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도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6) 통신기기실, 전기실, 신호기계실에는 출입감시가 가능하도록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할 사업소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7) 출입감시 및 도난예방을 위하여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8) 영상감시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의 주요 출입구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 및 다음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①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 ②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 ③ 영상기록장치 관리 책임 부서,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④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9) 변전소, 구분소, 보조구분소 등에는 영상감시, 출입통제 및 원격방송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10) 광역철도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설치시 여유길이가 1m 이하인 승강장의 영상감시 모니터는 승무원이 앉은 상태에서 운전실 측 창문을 통하여 승강장 상황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역사인 경우 현장여건, 경제성 및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스크린도어 수동개폐스위치함과 통합 설치할 수 있다.
- (11) 광역철도 지하역사 승강장 및 **맞이방**의 영상감시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화재지역에 자동감시가 가능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12) 영상감시설비는 **광역철도에서 하나의 노선에 운영기관이 둘이상인 경우 운영기관 경계역** 승강장의 영상을 상호간에 역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감시가 가능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13) 영상감시설비는 전기시계설비 또는 철도교통관제센터 NTP서버의 표준시각과 동기화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단, 불가피한 경우 GPS의 표준시각과 동기화되도록 설치한다)
- (14)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 고소작업 허용 높이를 고려하여 건물 내 설치하는 카메라는 높이 4.5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 높이를 변경할 수 있다.
- (15) 카메라 설치 높이가 4.5m를 초과한 실내 개소 및 교량 등은 유지보수 안전성을 고려하여 승강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개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강 방식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 (16)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구간**



표 1. 감시대상별 모니터 설치 위치

대상	모니터 설치 위치	목 적
역구내	철도교통관제센터	○ 역구내 화재 등 여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역철도 지하역 승강장 감시
	역 무 실	○ 맞이방, 승강장, ES 상·하부, 계단, 역무자동화설비, 여자화장실 입구 등 여객안전사고 예방 감시
	광역철도 전기동차 운전실	○ 승강장의 여객 승하차 상황 감시
	신호장/운전취급실	○ 일반철도 역구내 열차 진출입 상황 감시
	철도보안정보센터 (RSC : Railway Security information Center)	○ 철도범죄, 테러예방, 보안업무 등을 위해 맞이방 출입구 등을 감시
절연구분장치	전기사업소	○ 전차선로 절연구분장치 감시
무인변전소	변전사업소	○ 무인 구분소 및 보조 구분소 등의 내,외곽 감시
무인기능실	전기사업소 통신사업소 신호사업소	○ 외부 출입문 감시 (단, 전기실은 장비 운용상태 등도 감시)
취약개소 (고속철도 노선)	철도교통관제센터	○ 사람 접근 및 열차안전운행 감시
일반철도건널목 /낙석우려개소	인근역	○ 열차안전운행 지장여부 등 감시
건널선	철도교통관제센터 인근역	○ 열차운행상황 감시
지하구간 피난계단 비상구	인근역	○ 화재나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승객 동선 감시
노선 분기기 (선로전환기 포함)	운전취급실	○ 열차운행상황 감시
국가중요시설물	방호초소	○ 테러 등으로부터 철도시설 보호 및 열차안전운행

(17) 차량정비기지 또는 이와 유사한 철도 시설물

표 2. 감시위치

대상	모니터 설치 위치	목 적
검수차량 감시용	검수관련 부서	○ 차량의 검수 상황 파악
설비 감시용	설비관련 사무소	○ 환경 및 건축 기계설비 가동상황 감시
기지보안 감시용	외곽경비/정후문수위실 주요동/경비실	○ 차량정비기지 및 각 주요 건물 출입자 감시 ○ 울타리 침입자 감시
차량운행 감시용	운전취급실	○ 기지구내 차량 운행 상황 파악
차량외형 감시용	관할차량사업소/ 철도교통관제센터	○ 광역철도 입·출고선 차량 외형(상부, 좌/우측) 감시
기타 기능실 감시용	관련 부서	○ 전기실 설비 운용상황 파악

(18) 취약개소

고속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의함) 노선 구간에 대한 영상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취약개소를 대상으로 감시필요성, 안전시설(방호울타리, 낙석방지선 등) 설치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고속철도 외 노선 구간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정부기관)이 별도로 지정한 노선 및 설치개소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① 도로 또는 마을이 방호울타리(벽)로부터 30m 이내로 인접 및 과선교 또는 유교(낙하물 우려개소), 사람의 접근이 용이한 지점(야산, 구릉지, 농지 등) 등 안전성이 취약한 개소
- ② 길이 1km 이상 터널의 시·종점부, 경사갱 출입구, 수직구 출입구 및 울타리 출입문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제4항제4호
- ③ 방재설비가 설치된 장대터널(10km 이상)의 시·종점 및 경사갱 입구(단, 방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 ④ 국가중요시설물로 지정된 터널 및 교량 시·종점(방호초소 포함)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제4항제3호

(18) 방재설비가 설치된 장대터널(10km 이상)의 시·종점 및 경사갱 입구(단, 방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4. 영상감시설비의 기능 및 성능

(1) 영상감시설비의 기능 및 성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① 역사와 철도교통관제센터 간은 설계요구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영상을 전송한다.
- ② 옥외 설치 카메라는 폭우, 낙뢰로부터 보호되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③ 카메라는 해당 피사체의 거리와 사용조도 조건에서 최상의 해상도를 나타내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④ 취약개소 카메라는 주·야간 감시가 가능하며 조도변화에 따라 칼라에서 흑백영상으로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능 및 초점거리 변화에 따른 자동초점조절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영상감시장치는 망관리감시(NMS, TNMS)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CCTV 카메라 폴(Pole) 및 안전작업대

(1) 카메라 폴

CCTV 카메라 폴 경제성 및 시공성 등 고려하여 1단으로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1단 폴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로변 풍압, 열차진동 등에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카메라 폴 상부 안전작업대

카메라 폴 설치시 강관주 등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작업대 및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교량·고가 등의 추락위험개소, 경사개소, 6m 이상 폴의 경우 사다리에 등반이율을 설치하여야 한다.(단, 승강 방식인 경우 적용 제외)

6. 인터페이스 업무분계

(1) 역무용 통신설비

- ① 역구내 : 영상감시 콘솔(역 구내용 모니터, 영상전송장치, 저장장치 등 포함), 영상감시 카메라(역무자동화설비, 장애인용 설비, 취약개소 등), 승강장 감시 카메라
- ② 역구내 열차 진출입상황 감시 카메라(배관·배선 포함)
- ③ 절연구분장치 감시 카메라(배관·배선 포함)
- ④ 낙석우려지역 감시 카메라(배관·배선 포함) 등

(2) 건축통신설비

- ① 역구내 영상감시에 대한 배관·배선(승강장 감시 카메라 포함)

(3) 차량정비기지 또는 이와 유사한 개소의 영상감시설비는 해당분야에서 시설

7. 영상감시설비의 연계운용 인터페이스

- (1) 영상감시설비는 관련된 설비와 적절하게 연계하여, 승객 및 시설물 안전에 중요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2) 다음 각 호의 설비와 연계하여 보안 및 안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① 무인변전소(구분소)의 출입통제설비
 - ② 승강장 확인용 무선영상전송시스템
 - ③ 원격방송시스템
 - ④ 화재경보 등 소방설비
- (3) 영상저장장치(NVR), 영상표출장치 등 설비의 용량 및 수용채널 수 산정 시 기계설비 분야에서 설치하는 엘리베이터 내부 카메라의 통합 수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엘리베이터 내부 CCTV에서 제어반까지의 통신선로는 기계설비 분야 공사에 반영하고 승강기 종합제어반에서 역무실간 통신선로 및 IP설정은 통신 분야에서 시공한다.

해설 1. 영상감시설비

1. 영상감시설비 설계

- (1) 사업계획에 의거 설계범위, 기술규정, 수요와 개략 공사비 산정 등의 기본적인 설계방향을 결정하고, 영상감시 카메라 설치목적과 운영방식을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계도서 등에 나타내는 것으로 기본설계의 검토, 현장조사,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지급자재 소요량 작성 등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 (3) 각 역사와 통합 관제실간의 상세 운영 계획의 자료를 수집하여 영상감시망 계통도를 작성하고 각 역의 지형, 구조물 조건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영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영상전송방식의 선정 시 고려사항

- (1) 기존 철도 영상감시망과 철도교통관제센터 및 철도보안정보센터의 영상감시시스템간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국가 기간망의 영상전송에 있어서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카메라 렌즈 및 주변기기의 선택

(1) 영상감시 카메라

① 영상감시 카메라 촬상소자

영상감시 카메라 촬상소자는 CCD(Charge Coupled Device) 또는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를 사용한다.

② 렌즈의 선정 시 고려사항

감시거리(또는 초점거리), 설치장소, 요구성능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렌즈 사이즈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피사체의 크기 : 감시범위
- 나. 피사체와 카메라간의 거리 : 렌즈의 초점거리 선정
- 다. 경보연동의 유무 : 프리세트형의 사용 유무
- 라. 사용 카메라의 종류 : 촬상소자의 크기, 렌즈의 마운트 방식
- 마. 카메라의 설치 조건 : 원격제어의 유무, 자동조리개 기능의 유무

③ 카메라 및 렌즈의 선택 방법

- 가. 카메라는 고정형과 회전형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하며, 주요 개소에는 회전형에 팬틸트(Pan/Tilt), 줌(Zoom) 기능으로 원격조정 감시하도록 하고, 기타 개소는 고정형으로 설치



하되 설치 위치 및 감시 목적에 따라 광각, 표준, 망원 렌즈(Lens)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영상감시 카메라 선정시 고려사항

카메라는 IP카메라를 기본으로 하며 감시거리, 설치장소, 조도, 감시방식 등을 고려하여 카메라·렌즈 일체형 또는 렌즈 마운트 방식을 이용하여 선명한 화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피사체와의 거리 : 가변초점렌즈, 줌렌즈

나. 초점제어방식 : 자동 또는 수동

다. Day/Night기능 : Auto, B/W, Color 등

라. 적외선방사(IR:Infrared Radiation)투광기 구동방식 : 자동 또는 수동

(2) 영상감시 주변기기

① 카메라 하우징

카메라 하우징은 지상역이 지하역보다는 주위환경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선택하며 온도의 변화, 빗물 및 습기의 상태, 낙뢰 등의 환경변화 외에 먼지, 진동, 주위 고압선으로부터의 유도, 벌레들의 침입 등도 감안한다.

② 카메라 주변장치

가. **팬틸트(Pan/Tilt)**

피사체가 넓은 범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카메라 1대의 감시범위가 초과되는 경우, 원거리(100m 이상)에서 감시하는 경우에는 줌렌즈(Zoom Lens)와 함께 카메라를 상하좌우로 이동하여 피사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전동식 **팬틸트(Pan/Tilt)**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브라켓 및 지지대

(가) 카메라를 고정시키기 위한 장비로 실내에는 브라켓, 실외에는 폴 스탠드(Pole Stand)를 사용한다.

(나) 브라켓은 천정 취부형, 벽부형과 기타형태로 구분되며 현장여건에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다) 폴 스탠드는 최대 중량을 고려하여 기초가 형성되어야 하며, 폴의 재질은 용융아연 도금 강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조건에 따라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도 사용할 수 있다.

다. 모니터

(가) 모니터는 컬러 모니터로 설치한다.

(나) 모니터 설치장소

표 3. 모니터 규격 및 설치장소

설치위치	규격	감시대상
역무실	42" 이상	승강장
종합관제실	22" 이상	승강장
광역철도 전기동차 승강장	22" 이상	관할 Group 선택 및 보수자용 승강장
	현장여건 고려 선정	

(다) 승강장 여유길이가 1m 이하인 역사의 승강장 영상감시모니터 설치 위치는 그림 1과 같다.



(라) 승강장에 설치하는 영상감시 모니터는 산업용 고휘도 모니터를 설치한다.

(마) 옥외에 설치하는 합체는 방열형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3) 영상감시 카메라의 배선 및 배관

영상감시 카메라의 배선 및 배관은 현장여건과 전송품질,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규격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역사 영상감시설비

역 구내 승강장 카메라는 분배기를 이용하여 운전취급자와 역무실에서 동시에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맞이방, 장애인설비 등은 역무실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한 각 역에 영상전송장치를 설치하여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선택적으로 화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영상의 저장 및 재생에 있어서 간단,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5. 카메라 설치방법

(1) 승강장 감시(상·하행선)

① 승강장의 곡선반경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가. 직선역($R > 1200$)

나. 직·곡선역($600 < R < 1200$)

다. 곡선역($R < 600$)

② 광역철도 및 PSD가 설치된 승강장의 카메라는 50m 내외, 그 외 PSD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의 카메라는 70m 내외 간격으로 승강장 끝부분까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방향을 교차하여 설치하며 곡선 승강장 등 사각지대 발생 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시종점역 반복선의 경우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필요 시 카메라 및 모니터 설비를 설치한다.

- ③ PSD가 설치된 **승강장**의 카메라 설치시 PSD로부터 충분히 이격 설치하여 승객의 가림으로 인한 PSD문 여닫기 감시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 ④ PSD가 설치된 **승강장**의 카메라 설치시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이 있는 경우 **승강장과**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맞이방(개방용 매표구 등)
- ① 카메라 설치 높이는 바닥면(Floor Level)으로부터 2.3m 높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방호셔터가 설치된 지하역의 경우 카메라는 방호셔터 안쪽에 설치한다.
 - ③ 감시 범위가 넓거나 유동성이 많은 역사에는 전동식 펜/틸트(Pan/Tilt)형 카메라를 설치한다.
 - ④ 맞이방의 카메라 설치는 되도록 눈에 띄지 않는 기둥이나 가장자리에 설치한다.
- (3) 엘리베이터 : **주요 시설물(EV 내·외부)** 및 장애인 **승·하차**를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역무관리실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4) 개·집표구 및 발매기 : 개·집표구 및 중요시설물(자동발매기 등)의 보호 및 감시를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역무실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 (5) 취약개소 : 승객 집중개소나 방범취약개소에는 별도의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
- (6) 계단 : 승객 이동동선에 해당되는 계단(역사 주출입구, 콘코스 등)의 상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단, 원활한 감시가 어려울 경우 계단 하부 등에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6. 선로변 영상감시설비

(1) 열차진출입개소

- ① 역구내 열차진출입개소에 대한 영상감시설비는 감시필요성 등에 대해 관련부서의 요구사항을 확인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야간 상시 감시가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카메라는 가능한 21호, 51호 선로전환기를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4. 감시모니터 위치

감시 대상	목적	모니터 설치 위치	비고
역구내 열차 진출입개소	열차 진출입 상황감시	운전취급실(로컬관제실)	

(2) 절연구분개소

전차선로 절연구분개소에 대한 영상감시설비는 **상행선·하행선** 방면별로 각각 카메라

를 설치(복선기준 4대, 단선기준 2대) 하여야 한다. 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카메라 설치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3) 무인변전소(구분소)

무인변전소(구분소) 내 외곽 감시용 카메라는 부지 내 각 모서리에 고정형으로 설치(총 4대)하여 외곽 4면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현장여건이나 부지구조를 고려하여 추가로 고정형 또는 회전형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 출입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한다.

(4) 무인기능실

중요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무인 기능실(전기실, 통신기기실, 신호기계실)에 다음과 같은 시설물 보안관리 설비를 시설하여야 하며, 이 설비에는 관리자 및 보수자의 출입시간, 비상상황 발생 및 조치내역 등 각종 정보를 기록·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① 출입통제설비(무인변전건물 외곽 울타리 및 주출입구, 전기실, 통신기기실에 한함) : 각종 관독기로 출입문 개폐(관련 내용은 출입통제설비(KR I-xxxxxx)에 따른다.)
- ② 경보감시설비(통신기기실에 한함) : 출입문 무단 개폐 및 화재 등 이상 상황 발생시 관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설비
- ③ 영상감시설비 : 관할 사업소에서 무인기능실의 외부 출입문을 감시할 수 있는 설비(단, 전기실은 장비 운용상태 등도 감시)

7. 철도경찰 방법용 영상감시설비

(1) 철도경찰 방법용 영상감시설비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설치장소 : 역과 연결되는 출입구(양방향), 맞이방(콘코스, 대합실), 개집표구(양방향), 승강장을 연결하는 통로, 환승·외부연결통로(양방향), 철도경찰대 센터 내
 - ② 카메라 형태
 - 맞이방 중앙 : 줌, 회전형(Pan/Tilt)
 - 맞이방 중앙 이외의 설치장소 : 고정형
- (2) (1)항 설계시 해당구간 전송망의 전송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한다.



RECORD HISTORY

Rev.0('12.12.05) 철도설계기준 철도설계지침, 철도설계편람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준 체계를 국제적인 방법인 항목별(코드별)체계로 개정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하는데 목적을 둬.

Rev.1('13.06.18) 승강장 영상감시장치 모니터 설치기준 개정 등

Rev.2('14.06.30) ○ 영상전송방식 선정시 고려사항 명확화
○ 고속철도 취약개소 및 무인기능실 영상감시설비 설치기준 정립 등

Rev.3('14.12.30)○ 영상감시장치 자동삭제되는 기능추가
○ 광역철도 지하역사 승강장 및 대합실의 영상감시장치는 자동화탐설비와 연동되어 화재지역 자동감시 추가
○ 영상감시설비는 광역철도 운송기관간 경계역 승강장의 영상을 상호간역 및 교통관제센터 감시가능하도록 설치추가
○ 영상감시장치 폴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조건에 따라 스테인레스 스틸 사용 추가

Rev.4('15.07.01) ○ 감시대상 및 목적 수정
○ 카메라 배선 및 배관 내용 삭제
○ 감시대상 변경(역구내 열차 진출입개소)
○ 중복내용 삭제(7.4 터널 교량 건널목)
○ 사법경찰 영상감시설비 내용 추가

Rev.5('15.10.05) ○ 신호기계실내 감시설비 중복설치로 영상감시설비와 영상감시설비용 배관·배선 제외

Rev.6('16.12.27) 영상감시설비 설치기준(선로전환기, 무인기능실 등) 개정(설계기준처-3680호,'16.12.27)

Rev.7('17.12.27)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

Rev.8('18.12.17)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

Rev.9('19.12.19)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

Rev.10('20.07.30)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

Rev.11('20.12.29)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

Rev.12('21.07.05)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

Rev.13('21.12.21) 철도설계기준 및 편람 개정

Rev.14('22.07.04) 역사 계단부 카메라 추가, 무인기능실 영상감시설비의 감시개소 명확화 등

- Rev.15('22.12.27)
- 폴 등받이울 설치개소 명시
 - 승강장 카메라 설치기준 개정
 - 무인변전소 출입 감시용 카메라 설치기준 마련
 - 문구 수정 등

- Rev.16('23.12.28)
- 승강 방식 적용기준 마련
 - 시각 동기화 방안 단서 조항 추가

- Rev.17('24.07.19)
- 무인변전건물 출입통제설비 설치위치 명확화
 - 보안 강화 및 출입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출입통제 수단 추가

- Rev.18('25.02.11)
- “정보통신분야 철도건설기준 고도화 용역” 결과에 따른 각종 문구·자구 등 정비
 - 함체 내부 온도 상승 예방을 위한 방열형 함체 반영